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나21201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최윤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민

변 론 종 결 2022. 5. 17.

판 결 선 고 2022. 7. 19.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18가단10563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B은 원고에게 88,782,844원과 이에 대하여 2022.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7. 4. 4. 접수 제289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은 E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6. 8. 11. 접수 제730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82,293,698원과 그 중 15,307,397원에 대하여 2021.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취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9, 10행의 ‘F의 E에 대한 관련소송에서 확정된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를 ‘F의 G와 E에 대한 관련소송에서 확정된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로 고치고, 제4쪽 제4행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고치며, 제6쪽 ‘[인정근거]’에 ‘갑 제39호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한다.

재판장 판사 황현찬, 판사 오성우, 판사 박이규